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7 선고 2022가단52121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3. 6. 12.

판 결 선 고 2023. 7. 17.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2,003,501원 및 그 중 10,049,249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9,997,963원에 대하여는 2022. 7. 22.부터 각 2022. 7. 2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4. 2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4. 28. 접수 제102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3. 13. 피고 A와 신용보증원금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원리금상환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30. 피고 A와 신용보증원금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원리금상환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2022. 1. 1.부터 연 8%이다.

라. 피고 A는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2020. 3. 13. 약정이율을 연 1.68%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C으로부터 2021. 3. 30. 약정이율을 연 2.74%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각 대출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마. 한편 피고 A는 2021. 4. 26.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4. 28. 접수 제1026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 거래가액 96,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합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2019. 1. 22. 설정한 근저당권에 따른 D에 대한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피고 B에 대한 64,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사. 이후 피고 A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2022. 6. 15. C에 10,049,249원(원금 10,000,000원 및 이자 49,249원)을,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라 2022. 7. 22. C에 9,997,963원(원금 9,900,000원 및 이자 98,69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는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C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A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22,003,501원 및 그 중 10,049,24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 6. 15.부터, 9,997,963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 7. 22.부터 각 이 사건 2022. 7.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2. 7. 28.까지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는 피고 B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던 점, ②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부족하였던 점, ③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약 10개월 후인 2022. 2. 25.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점, ④ 그에 따라 원고가 2022. 6. 15. 및 2022. 7. 22. 각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적극재산으로 거래가액 96,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합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2019. 1. 22. 설정한 근저당권에 따른 D에 대한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피고 B에 대한 64,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A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자력 상태의 피고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B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에게 다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원물반환으로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학식

별지

부동산의 표시

경기 가평군 E 외 2필지 제4층 F호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 가평군 E, G, H

[도로명주소] 경기 가평군 I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4층 각 162.3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 가평군 E 대 4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F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75.1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53분의 56.625

끝,

